



제433회 국회(임시회)
제1차 국토교통위원회

골재채취법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 소상공인에 대한 별도 행정처분 기준의
근거 명시 》

■ 조정식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15815호)

2026. 4.

국 토 교 통 위 원 회

수석전문위원 곽현준

목 차

I . 조정식의원 대표발의(제2215815호)	1
1. 제안경위	1
2.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3. 검토의견	3
가. 소상공인에 대한 별도 행정처분 기준의 근거 명시 (안 제19조제3항 후단 신설)	3

I. 조정식의원 대표발의(제2215815호)

1. 제안경위

가. 발 의 자 : 조정식의원 등 13인

나. 발 의 일 : 2025. 12. 31.

다. 회 부 일 : 2026. 1. 2.

2.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골재채취업자의 등록의 취소 등 제재처분의 기준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는데, 현행법 시행령에서는 위반행위자가 고의 또는 중과실이 없는 소상공인인 경우 처분을 감경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소상공인에 대하여만 따로 처분을 감경하도록 하는 것은 법의 취지에 비추어 별도의 위임규정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됨에 따라 고의 또는 중과실이 없는 소상공인에 대하여는 처분을 감경할 수 있는 근거를 법에 직접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19조제3항 후단 신설).

3. 검토의견

가. 소상공인에 대한 별도 행정처분 기준의 근거 명시 (안 제19조제3항 후단 신설)

개정안은 골재채취업자가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1)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고의 또는 중과실이 없는 경우에는 영업의 지속가능성, 시장·산업 여건 등을 고려하여 등록취소 등의 세부 기분을 따로 정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현 행	개 정 안
제19조(등록의 취소 등) ①·② (생략) ③ 제1항에 따른 등록취소 등의 세부적인 기준은 그 사유와 위반 정도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후단 신설>	제19조(등록의 취소 등) ①·② (현행과 같음) ③ ----- ----- ----- 이 경우 골재채취업자가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

1)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소상공인”이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소기업(小企業) 중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자를 말한다.

1. 상시 근로자 수가 10명 미만일 것
2. 업종별 상시 근로자 수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할 것
-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소상공인이 그 규모의 확대 등으로 소상공인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그 사유가 발생한 연도의 다음 연도부터 3년간은 소상공인으로 본다. 다만, 소기업 외의 기업과 합병하거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소상공인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소상공인기본법 시행령」

제3조(소상공인의 범위 등) ① 「소상공인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주된 사업에 종사하는 상시 근로자 수가 업종별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광업·제조업·건설업 및 운수업: 10명 미만
2. 제1호 외의 업종: 5명 미만

현행	개정안
④·⑤ (생략)	<u>로서 고의 또는 중과실이 없는 경우에는 영업의 지속가능성, 시장·산업 여건 등을 고려하여 이를 따로 정할 수 있다.</u> ④·⑤ (현행과 같음)

현행법 제19조²⁾는 골재채취업³⁾ 등록의 취소 등에 관한 규정으로,

2) 「골재채취법」

제19조(등록의 취소 등) ①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골재채취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골재채취업의 등록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영업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제3호 및 제13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골재채취업의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14조에 따른 등록을 한 경우
2. 제14조제3항에 따라 등록기준에 관한 사항을 신고기간 내에 신고하지 아니하고 3개월이 지난 경우
3. 제15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
4. 골재채취업의 등록기준에 미치지 못하게 된 경우. 다만, 일시적으로 등록기준에 미달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5. 제16조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6. 제18조를 위반한 경우
7. 제21조제3항에 따른 시설·장비·서류 등의 검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경우
8. 제22조를 위반하여 골재채취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골재를 채취한 경우
- 8의2. 제22조의4를 위반하여 인증을 받지 아니하거나 품질검사를 거치지 아니한 골재를 공급한 경우
9. 제28조에 따른 예방조치를 게을리하여 공중(公衆)에 위해(危害)를 끼친 경우
10. 제31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11. 제32조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하여 신고나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골재를 선별·세척 또는 파쇄한 경우
- 11의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32조제1항에 따른 신고 또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변경신고를 하였거나 같은 조 제4항에 따라 신고한 내용에 대한 이행 여부를 확인받지 아니한 경우
12. 다른 법령을 위반하여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요구한 경우
13. 영업정지기간에 영업을 한 경우

③ 제1항에 따른 등록취소 등의 세부적인 기준은 그 사유와 위반 정도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3) 「골재채취법」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골재”란 하천, 산림, 공유수면이나 그 밖의 지상·지하 등 자연상태에 부존(賦存)하는 암석[쇄석용(碎石用)에 한정한다], 모래 또는 자갈로서 콘크리트 및 아스팔트콘크리트의 재료 또는 그 밖에 건설공사의 기초재료로 쓰이는 것을 말한다.
2. “채취”란 골재를 캐거나 들어내는 등 자연상태로부터 분리하여 내는 것을 말한다.
3. “골재채취업”이란 영리를 목적으로 골재를 채취·선별·세척 또는 파쇄(破碎)하는 사업을

시장·군수·구청장으로 하여금 골재채취업자가 등록기준에 관한 사항을 신고기간 내에 신고하지 아니하고 3개월이 지난 경우, 등록기준에 미치지 못하게 된 경우 등에 대하여 골재채취업의 등록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영업의 정지를 명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위반행위별 등록취소 등의 세부기준은 현행법 시행령에서 규정하고 있는데,

현행법 시행령 별표 1의2⁴⁾는 제1호마목에서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⁵⁾ 말한다.

4) 「골재채취법 시행령」

제24조(등록취소 등의 세부기준) 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위반행위별 등록취소 등의 세부기준은 별표 1의2와 같다.

■ 골재채취법 시행령 [별표 1의2]

등록취소 등의 세부기준(제24조 관련)

1. 일반기준

라. 처분권자는 위반행위의 동기·내용·횟수 및 위반의 정도 등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사유를 고려하여 가목 및 나목에 따른 처분을 가중하거나 감경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처분이 영업정지인 경우에는 그 처분기준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가중하거나 감경할 수 있고, 등록취소인 경우에는 6개월의 영업정지 처분으로 감경(법 제19조제1항제1호, 제3호 및 제13호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할 수 있다.

1) 가중사유

가) 위반행위가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가 아닌 고의나 중대한 과실에 의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나) 위반의 내용·정도가 중대하여 공중에 미치는 피해가 크다고 인정되는 경우

2) 감경사유

가) 위반행위가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아닌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에 의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나) 위반의 정도가 경미하여 단기간 내에 시정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다) 위반행위자가 해당 위반행위로 인하여 검사로부터 기소유예 처분을 받거나 법원으로부터 선고유예 판결을 받은 경우

라) 위반행위자가 골재산업이나 지역사회 발전 등에 기여한 사실이 인정되는 경우

마) 위반행위가 적발된 날부터 최근 3년 이내에 법을 위반하여 등록취소 또는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사실이 없는 경우

바) 골재수급안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에 따른 소상공인이 고의 또는 중과실 없이 위반한 경우에는 영업정지는 처분기준의 100분의 70 범위에서 감경할 수 있도록 하고, 등록취소는 6개월의 영업정지 처분으로 감경할 수 있도록 하여,

제1호라목에 따른 일반적인 가중 또는 감경 범위(영업정지: 처분기준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가중 또는 감경, 등록취소: 6개월의 영업정지 처분으로 감경)에 비해 소상공인에 대한 영업정지 처분 감경 범위를 보다 확대하여 규정하고 있음.

마. 처분권자는 **고의 또는 중과실이 없는 위반행위자가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인 경우에는** 다음의 사항을 고려하여 제2호의 개별기준에 따른 **처분을 감경**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처분이 **영업정지인 경우에는 그 처분기준의 100분의 70 범위에서 감경**할 수 있고, 그 처분이 **등록취소**(법 제19조제1항제1호, 제3호 및 제13호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인 경우에는 **6개월의 영업정지 처분으로 감경**할 수 있다. 다만, 라목에 따른 감경과 중복하여 적용하지 않는다.

- 1) 해당 행정처분으로 위반행위자가 더 이상 영업을 영위하기 어렵다고 객관적으로 인정되는지 여부
- 2) 경제위기 등으로 위반행위자가 속한 시장·산업 여건이 현저하게 변동되거나 지속적으로 악화된 상태인지 여부

5)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소상공인”이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소기업(小企業) 중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자를 말한다.

1. 상시 근로자 수가 10명 미만일 것
 2. 업종별 상시 근로자 수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할 것
-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소상공인이 그 규모의 확대 등으로 소상공인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그 사유가 발생한 연도의 다음 연도부터 3년간은 소상공인으로 본다. 다만, 소기업 외의 기업과 합병하거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소상공인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소상공인기본법 시행령」

제3조(소상공인의 범위 등) ① 「소상공인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주된 사업에 종사하는 상시 근로자 수가 업종별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광업·제조업·건설업 및 운수업: 10명 미만
2. 제1호 외의 업종: 5명 미만

【골재채취업자에 대한 행정처분 감경 범위 비교】

구분	영업정지	등록취소
일반적인 감경범위	처분기준의 <u>1/2 범위</u> 에서 감경 가능	6개월의 영업정지로 감경 가능
소상공인에 대한 감경 범위	처분기준의 <u>70/100 범위</u> 에서 감경 가능	

※자료: 현행법 시행령 별표 1의2

소상공인 행정처분 감경 범위 확대는 2023년 시행령 개정을 통해 도입된 것으로, 당시의 「소상공인 경제회복 지원을 위한 61개 법령의 일부개정령에 관한 대통령령」은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의 여파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의 부담을 완화하고 조속한 경영 정상화를 지원하기 위하여, 고의 또는 중과실이 없는 소상공인의 위반 행위에 대한 제재처분 감경기준을 신설한 것으로 설명하고 있음.⁶⁾

6) 「소상공인 경제회복 지원을 위한 61개 법령의 일부개정령에 관한 대통령령」
(대통령령 제33434호, 2023.4.25., 일괄개정 및 시행)

◇ 개정이유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의 여파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의 부담을 완화하고 조속한 경영 정상화를 지원하기 위하여, 고의 또는 중과실이 없는 소상공인의 위반행위에 대한 과태료·과징금 또는 영업정지 등의 처분을 최대 100분의 70 범위까지 감경할 수 있도록 하고, 등록취소·허가취소 등의 처분을 영업정지 처분 등으로 감경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소상공인에 대한 제재처분 감경기준을 신설하는 내용으로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 61개 대통령령을 개정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소상공인에 대한 과태료 및 과징금의 감경기준 신설(제1조부터 제20조까지, 제22조부터 제34조까지 및 제36조부터 제61조까지): 고의 또는 중과실이 없는 위반행위자가 「소상공인기본법」에 따른 소상공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소상공인의 현실적인 부담능력, 경제위기 등으로 소상공인이 속한 시장·산업 여건이 지속적으로 악화된 상태인지 여부를 고려하여 과태료 및 과징금을 최대 100분의 70 범위까지 감경할 수 있도록 64개의 감경기준을 신설함.

나. 소상공인에 대한 영업정지 및 등록취소 처분 등의 감경기준 신설(제6조, 제9조, 제16조, 제21조, 제35조, 제36조, 제40조 및 제45조부터 제47조까지): 고의 또는 중과실이 없는 위반행위자가 「소상공인기본법」에 따른 소상공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행정처분

그런데,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에 대한 제재 완화를 규정하고 있는 입법례를 살펴보면, 「전력기술관리법」, 「어장관리법」 등⁷⁾은 소상공인 등에 대하여 등록취소·영업정지 처분을 예외로 하는 근거를 법률에 직접 규정하고 있음.

개정안은 이같은 유사 입법례를 고려하여 소상공인에 해당하는 골재 채취업자가 고의 또는 중과실이 없는 경우에는 영업의 지속가능성, 시장·산업 여건 등을 고려하여 등록취소 등의 세부적인 기준을 따로 정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법률에 규정하려는 것으로,

개정안이 입법화되는 경우 현행법 시행령에 규정되어 있는 소상공인에 대한 행정처분 감경 범위 확대의 법적 근거를 보다 명확하게 할 수

으로 그 소상공인이 더 이상 영업을 영위하기 어렵다고 객관적으로 인정되는지 여부, 경제위기 등으로 소상공인이 속한 시장·산업 여건이 지속적으로 악화된 상태인지 여부를 고려하여 영업정지 처분을 최대 100분의 70 범위까지 감경할 수 있도록 하고, 등록취소 처분을 영업정지 처분으로 감경할 수 있도록 12개의 감경기준을 신설함.

7) 「전력기술관리법」

제16조(등록의 취소·영업정지) 시·도지사는 설계업자 및 감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등록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나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2. 제14조제2항에 따른 등록기준에 미달하게 된 경우. 다만,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 등이 일시적으로 등록기준에 미달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2024.2.6. 단서 신설>

「어장관리법」

제20조(등록의 취소 등) ① 시·도지사는 어장정화·정비업의 등록을 한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등록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영업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나 제2호에 해당하면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3. 제17조제1항에 따른 등록 기준에 미달하게 된 경우. 다만,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 및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소기업이 일시적으로 등록기준에 미달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2025.4.22., 일부 개정>

있을 것으로 보임.

국토교통부는 등록취소 등의 세부적인 기준을 대통령령으로 위임하고 있는 현행법 제19조제3항⁸⁾에 따라서도 소상공인에 대한 행정처분 감경이 가능한 점, 정책환경 및 시장 여건 변화 등에 따라 탄력적으로 운용할 필요성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행정처분 기준을 별도로 정할 수 있는 대상과 그 사유를 법률에 명시적으로 규정하는 것은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임.

문 의 처
02)6788-5591

8) 「골재채취법」

제19조(등록의 취소 등) ③ 제1항에 따른 등록취소 등의 세부적인 기준은 그 사유와 위반 정도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